

의안번호	2205632
의 퇴 인	박용갑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5.
추 계 번호	24F515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장애인·다자녀 양육자·국가유공자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 등에
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—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장애인·다자녀 양육자·국가유공자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는 2025년 4,501억원, 2027년 5,924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1조 5,534억원(연평균 5,17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장애인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년부터 2027년간 총 4,335억원(연평균 1,44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년부터 2027년간 총 1,586억원(연평균 52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년부터 2027년간 총 1,051억원(연평균 35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년부터 2027년간 총 8,562억원(연평균 2,85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5~2027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장애인의 보철용·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7조제1항)	-1,482	-1,444	-1,408	-4,335	-1,445
다자녀 양육자의 양육목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)	-529	-529	-529	-1,586	-529
국가유공자의 보철용·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29조제4항)	-361	-350	-340	-1,051	-350
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6조제3항)	-2,129	-2,786	-3,647	-8,562	-2,854
합 계	-4,501	-5,109	-5,924	-15,534	-5,178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제1항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)	○ 장애인의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2	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(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)	○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3	안 제29조제4항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)	○ 국가유공자의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4	안 제66조제3항(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)	○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7조제1항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(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)	○	
3	안 제29조제4항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)	○	
4	안 제66조제3항(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(안 제17조제1항) 장애인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최근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(취득세)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취득세 감면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 762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(자동차세)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연평균감소율 5%에 따라 감소한다고 가정
- (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)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취득세 감면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 529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- (안 제29조제4항) 국가유공자가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최근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(취득세)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취득세 감면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 177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(자동차세)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연평균감소율 6%에 따라 감소한다고 가정
- (안 제66조제3항)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최근 3년(2021~2022년)간 취득 건수 연평균 증가율 31%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는 취득세가 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하며,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하이브리드자동차 가격 및 취득세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 1건당 감면액은 40만원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(안 제17조제1항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 개요) 장애인이 보철용·생활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
 - 감면율: (취득세·자동차세) 100%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- (감면실적)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최근 3년(2021~2023년) 지방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취득세 감면액은 2021년 750억원에서 2023년 828억원으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(연평균 762억원)

[표 2] 최근 3년간 장애인 취득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액 추이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1	2022	2023	연평균액
취득세 감면액	750	710	828	762

자료 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자동차세 감면액은 2021년 943억원에서 2023년 847억원으로 감소추세(연평균 감소율 5%)에 있음

[표 3] 최근 3년간 장애인 취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액 추이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21	2021	2022	연평균 증감율
자동차세 감면액	943	887	847	-5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-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 1,482억원, 2027년 1,408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4,335억원(연평균 1,445억원)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(취득세)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취득세 감면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 762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(자동차세) 최근 3년(2021~2022년)간 장애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실적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감소율(5%)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4]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감면액 추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취득세 감면액	762	762	762	2,287	762
자동차세 감면액	720	682	646	2,048	683
합 계	1,482	1,444	1,408	4,335	1,445

나.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(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 개요)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
 -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
 - ①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, ② ① 이외의 승용자동차, ③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, ④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, ⑤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
 - 다만, ②의 경우에는 140만원을 한도로 함
 - 상기 이외에 다음과 같은 대체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
 -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
 -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

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

-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「민법」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

○ 적용기간: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

□ (감면실적) 최근 3년간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은 2021년 597억원에서 2023년 508억원으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

[표 5] 최근 3년간 다자녀 양육자 취득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액 추이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1	2022	2023	연평균액
취득세 감면액	597	481	508	529

자료 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□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 529억원, 2027년 529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1,586억원(연평균 529억원)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-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 529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6]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감면액 추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취득세 감면액	529	529	529	1,586	529

자료 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다. 국가유공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(안 제29조제1항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□ (제도 개요) 국가유공자가 보철용·생활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

○ 감면율: (취득세·자동차세) 100%

- 다만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각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50% 경감

○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
□ (감면실적)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최근 3년(2021~2023년) 지방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취득세 감면액은 2021년 182억원에서 2023년 185억원으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(연평균 177억원)

[표 7]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추이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1	2022	2023	연평균액
취득세 감면액	182	164	185	177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자동차세 감면액은 2021년 249억원에서 2023년 220억원으로 감소추세(연평균 감소율 6%)에 있음

[표 8] 국가유공자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추이: 2020~2022년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감율
자동차세 감면액	249	233	220	-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-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 361억원, 2027년 340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1,051억원(연평균 350억원)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(취득세)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취득세 감면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 177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(자동차세)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실적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감소율(6%)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9] 국가유공자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감면액 추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취득세 감면액	177	177	177	531	177
자동차세 감면액	184	173	163	520	173
합 계	361	350	340	1,051	350

라.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(안 제66조제3항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 개요)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
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
 -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: 취득세 면제
 - 취득세액이 40만원 초과: 취득세에서 40만원 공제
 - 적용기간: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
- (감면실적) 최근 3년간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액은 2021년 725억원(181,359건)에서 2023년 1,382억원(310,680건)으로 증가추세(건수 31%, 감면액 38%)

[표 10] 최근 3년간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액 추이

구분	2021	2022	2023	합계	연평균 증감율/ 연평균액
건수(건)=A	181,359	230,448	310,680	722,487	31%
취득세 감면액 (억원)=B	725	913	1,382	3,020	38%

자료 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-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 2,129억원, 2027년 3,647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8,562억원(연평균 2,854억원)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 건수 연평균 증가율(31%)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10]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감면액 추계
(단위: 건,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건수(A)	532,215	696,586	911,720	2,140,522	713,507
취득세 감면액 =A×40만원	2,129	2,786	3,647	8,562	2,854

자료 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